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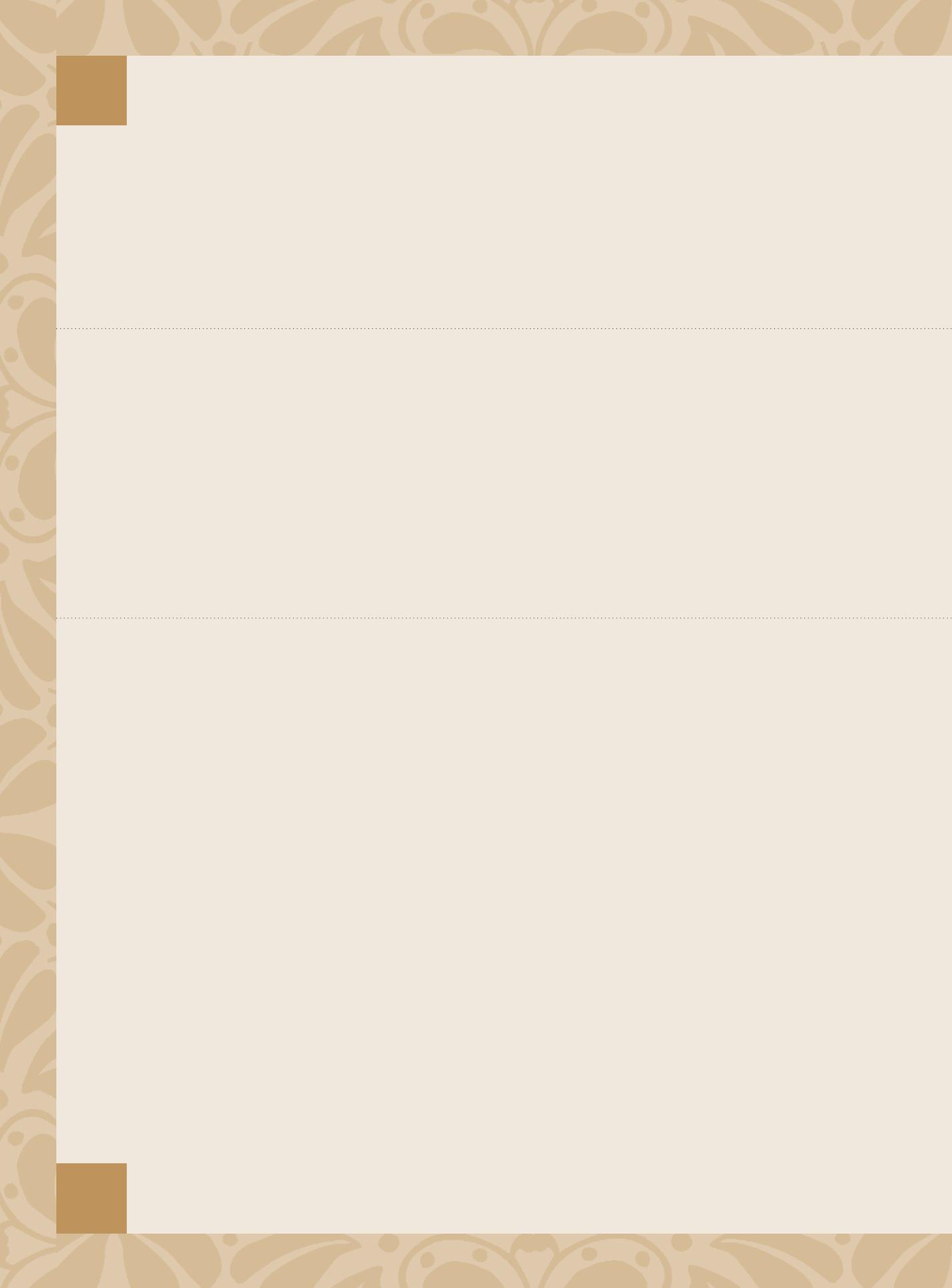
■ 약어 표 ■

법	· · · · ·	법원조직법
규칙	· · · · ·	양형위원회규칙
운영규정	· · · ·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업무규정	· · · · ·	양형자료분석관 업무규정
공선법	· · · · ·	공직선거법
교통법	· ·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교법	· · · · ·	도로교통법
미약관리법	· · · · ·	미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경법	· ·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기법	· ·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법	· ·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법	· ·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외감법	· ·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유해물질법	· · ·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본시장법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가법	· ·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강법	· ·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경법	· ·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처법	· ·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부

양형위원회 현황



2012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 제1장 양형위원회 개관
- 제2장 양형위원회의 구성

제1장 양형위원회 개관

I 개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양형에 반영하고 형사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표 아래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법률 제8270호)이 2007. 1. 26. 공포되어 2007. 4. 27. 시행됨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 최초로 양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양형위원회는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주된 과업으로 하고 있다.

II 위원회의 위상

1 양형기준 설정·변경 및 양형정책 심의·의결기관

양형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의결기관이다(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위원회가 설정하는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위원회가 연구하는 양형정책 또한 양형의 주요 지도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위원회는 우리 양형제도 전반에 걸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대법원 소속의 독립 위원회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에 소속되어 있으나,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3항에서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원을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양형위원회는 법률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상설의 의결기구로서, 자문기구인 대법원의 다른 위원회와 구별된다.

③ 독립성·전문성 및 국민적 정당성을 갖춘 국가기관

양형위원회는 독립성·전문성 및 국민적 정당성을 갖춘 국가기관이다(법 제 81조의2, 제81조의3). 법관에게 제공하는 권고적 양형기준의 설정이라는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자격으로 엄격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한편, 양형기준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III 위원회의 설립 목적

1 양형의 균등성·적정성 제고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예방하여 양형의 균등을 도모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양형을 도출하게 함으로써 양형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2 형사사법의 투명화·합리화 제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되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양형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형심리의 충실화를 통해 양형의 합리화를 촉진한다.

3 양형실무의 현대화·과학화 구현

종전 사건의 양형자료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양형인자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양형을 도출하게 함으로써 양형과정의 현대화·과학화를 구현한다.

4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되고, 평등권,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원칙이 투영된 양형기준을 설정·적용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법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IV 위원회의 기능

1 양형기준의 설정·변경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양형의 일관성을 증진하고 개별범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양형기준 설정·변경작업을 위하여, 위원회는,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하는 운영지원단으로 하여금 각종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운영규정 제 21조),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의결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 절차 ◆



2 양형정책의 연구·심의

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 외에도 그와 관련된 각종 양형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형벌 또는 양형기준의 목적,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형사실체법의 정비방안, 가석방 실태 분석, 사회 내 처우의 제도적 발전방안 등 양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양형기준제도를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초의 양형기준 설정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넘어서는 거시적인 양형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양형위원회는 양형합리화 방안 등 양형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별도의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운영규정 제4조 제2호).

V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

1 제1기 양형위원회

2007. 4. 27. 출범한 제1기 양형위원회는 외국 양형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과거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한국식 양형기준제의 틀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2009. 4. 24.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으며, 위 양형기준은 2009.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2 제2기 양형위원회

2009. 4. 27. 출범한 제2기 양형위원회는 1기 양형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2011. 3. 21.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으며, 위 양형기준은 2011.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3 제3기 양형위원회

2011. 4. 27.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양형위원회는 2011. 6. 14. 제35차 회의에서 양형기준의 목적, 국민적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하여 금융·경제¹⁾, 지식재산권, 폭력(상해, 폭행, 협박),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등 8개 범죄

1) 위원회 제38차 회의(2011. 12. 19.)에서 '금융·경제범죄'의 명칭을 '증권·금융범죄'로 변경하였음.

군을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으로 선정하였다. 제3기 양형위원회는 2012. 6. 18. 제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2012. 8. 20. 제43차 회의에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였으며, 2013. 2. 4. 제46차 회의에서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2012.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2012. 9.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은 2013.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제3기 양형위원회는 2012. 1. 30. 제39차 회의에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여 2012. 3. 16.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2013. 4. 22. 제48차 회의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과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수정 양형기준은 2013. 5. 15.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되었으며,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3. 5. 15.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3. 6. 19.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고 있다.

4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

2013. 4. 27. 출범한 제4기 양형위원회는 2013. 6. 24. 제50차 회의에서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 알선 등²⁾,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 방해, 게임물,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범죄를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으로, 약취·유인, 마약, 식품·보건범죄를 제4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으로 각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4기 위원회는 그 임기를 전반기(2013. 4. 27. ~ 2014. 4. 26.)와 후반기(2014. 4. 27. ~ 2015. 4. 26.)로 나누어 전반기에는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하고, 약취·유인,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며, 후반기에는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하고,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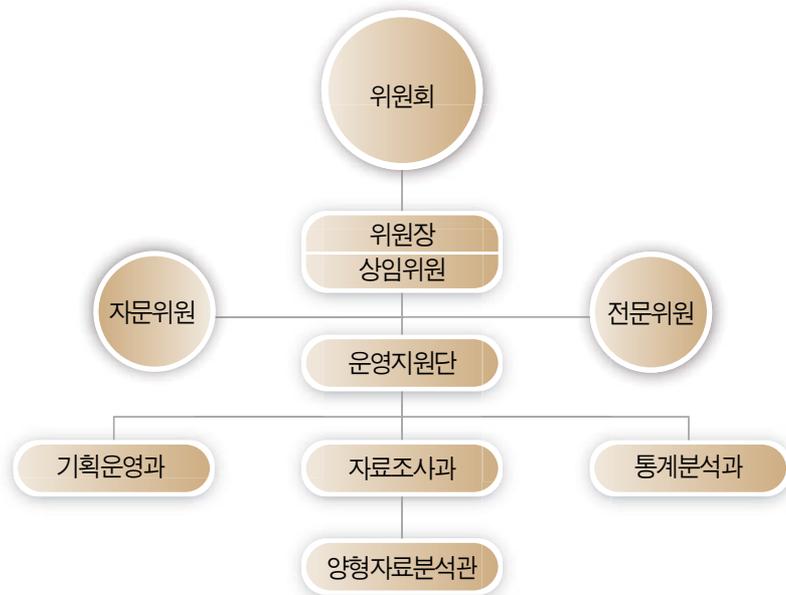
2) 위원회 제51차 회의(2013. 9. 9.)에서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명칭을 '성매매범죄'로 변경하였음.



| 제3기 양형위원회 기념촬영(2013. 4. 22.) |

제2장 양형위원회의 구성

I 조직도



II 위원장 및 위원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의 위원(법관 4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각 연임할 수 있다(법 제81조의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그 직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법 제81조의4 제1항, 제81조의5 제1항, 규칙 제4조).

◆ 제3기 양형위원회 구성 ◆

(2013. 4. 26. 기준)

지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위원 (법관)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
	여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기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 (검사)	채동욱	검찰총장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원 (변호사)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
위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학식·경험)	이용모	SBS 보도본부장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 위원 변경(2012. 5. ~ 2013. 4.)

김진권 위원이 해임간주되어 조용호 위원(전 서울고등법원장, 2013. 2. 25.자)이, 조용호 위원의 사임으로 조병현 위원(서울고등법원장, 2013. 4. 17.자)이, 임성근 상임위원의 겸임해임발령으로 이진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 2. 14.자)이, 안창호 위원이 해임간주되어 김진태 위원(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 10. 25.자)이, 김진태 위원의 사임으로 채동욱 위원(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 12. 17.자)이, 백종수 위원의 사임으로 이건리 위원(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12. 8. 10.자)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되었다.

◆ 제4기 양형위원회 구성 ◆

(2013. 4. 27. 기준)

지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전 호 숙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위원 (법관)	조 병 현	서울고등법원장(연임)
	여 상 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임)
	조 경 란	법원도서관장
	이 진 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임)
위원 (검사)	임 정 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 건 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연임)
위원 (변호사)	박 상 훈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 광 수	변호사(연임)
위원 (교수)	오 영 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 보 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학식·경험)	이 화 섭	KBS 보도본부장
	유 성 희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III 전문위원

1 업무

위원회에서 심의할 양형기준안 작성 및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의 연구, 기타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규칙 제8조 제1항, 제3항).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규칙 제8조 제2항).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운영규정 제23조 제1항).

2 현황

전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2013. 5. 16. 기준)

성 명	직 역	소 속
구 회 근 (수석전문위원)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함 석 천	법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최 승 원	법관	법원행정처
주 용 완	검사	대검찰청
조 석 영	검사	대검찰청
범 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최 진 녕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강 수 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 우 예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김 혜 정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 수 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수 정	교수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이 진 국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문위원 변경(2012. 5. ~ 2013. 5.)

안효질, 이정훈, 정순섭 위원이 임기만료되어 이종교 위원이 2012. 5. 16.자로 신규 위촉되었고, 심재철 위원이 사임하여 주용완 위원이 2012. 8. 20.자로 신규 위촉되었으며, 최형표 위원이 사임하여 최승원 위원이 2013. 2. 27.자로 신규 위촉되었다. 또한 이주원, 이종교 위원이 임기만료되어 강수진, 노수환 위원이 2013. 5. 16.자로 신규 위촉되었다.

3 업무분장

(2013. 5. 16. 기준)

구분	분장사무	구성원
총괄팀	1. 제1, 2팀 연구결과 검토 및 양형기준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양형정책의 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구회근(팀장), 함석천, 주용완
제1팀	1. 개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2. 일반적 양형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3. 양형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4. 양형합리화방안에 관한 사항	함석천(팀장), 강우예, 이수정, 이진국, 조석영, 최진영
제2팀	1. 개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2. 양형인자의 추출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양형기준의 적용 및 효과에 관한 사항 4. 형사실체법 정비방안에 관한 사항	주용완(팀장), 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법 현, 최승원

IV 자문위원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방법 이외에도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문위원단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다.

◆ 자문위원단 구성 ◆

(2013. 4. 26. 기준)

연번	분야	성명	생년월일	경력
1	법학계	배중대	1952. 7. 1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심희기	1956. 3. 2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양현아	1960. 5. 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4		정현미	1959. 9. 18.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언론계	권태선	1955. 4. 27.	한겨레신문 편집인
6		박보균	1954. 1. 24.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중앙일보 대기자
7	교육계	손병두	1941. 8. 3.	전 서강대학교 총장 숙명학원 이사장
8		이광자	1943. 12. 10.	전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9		이배용	1947. 1. 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현 코피온 총재
10	시민단체	신중원	1961. 5. 14.	서울YMCA 시민증계실장
11		차경애	1944. 2. 7.	한국YWCA연합회 회장

V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한 사무기구로 운영지원단을 두고 있다(법 제81조의9).

1 운영지원단장

운영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는 운영지원단장은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 등으로 보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

- 위원회 통상업무
- 위원장 및 상임위원 보좌

- 양형자료분석관 업무의 지휘·감독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운영
- 통계자료의 분석 및 전문위원 연구의 기초자료 정리
- 대외협력업무 및 의견수렴업무

2 사무과

운영지원단 내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가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7조 제4항).



3 양형자료분석관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따라 운영지원단에 소속되어 양형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를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업무규정 제2조 제1항). 양형자료분석관 배치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법원	직급	인원
운영지원단(본부)	법원사무관	1
	법원주사보	1
서울고법	법원사무관	1
대전지법	”	1
대구지법	”	1
부산지법	”	1
광주지법	”	1
서울중앙지법	법원주사보	1
서울동부지법	”	1
서울남부지법	”	1
서울북부지법	”	1
서울서부지법	”	1
의정부지법	”	1
인천지법	법원주사	1
수원지법	”	1
총 원		15